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센터 사용허가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센터 사용허가 기준(입주자격) 조정(안 제4조)
- 중복내용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6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 1부.

2.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6. 10.)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5. 31.
- 회부일자 : 2024. 6. 10.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사회복지센터 사용허가 기준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복지센터 사용허가 기준(입주자격) 조정(안 제4조)
- 중복내용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6조 ~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¹⁾에서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사회복지시설 사용허가 기준인 입주자격을 조정하고 중복내용 삭제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사용허가 등)에서 센터의 입주자격을 간소화하고 명확히 함.

<현 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영위하는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되, 군 소관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 정 안>

- ▶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영위하는 법인·단체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사업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
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사업

라.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4.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법률구조공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2에 따른 법인

6.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창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평창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평창군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 안 제6조(입주자의 의무)에서는 현행 조례 내 제6조 및 제7조 입주자의 의무와 입주자의 책무로 비슷하게 중복된 내용을 입주자의 의무로 일원화하여 명료하게 조문을 정비함.

5. 종합검토의견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개정의 취지가 합당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확인됨.

[붙임 2]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3
----------	-----

제출년월일 : 2024. 5. 3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센터 사용허가(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효율적인 센터 운영 추진

나. 용어의 정의, 관계법령, 오탈자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정비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내용 완화(안 제4조)

나. 중복내용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6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4. 9. ~ 2024. 4.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574호, 복지정책과-11904(2024. 4. 8.)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5448(2024. 4. 3.)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실-5448(2024. 4. 3.)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2383(2024. 4. 4.)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실-8001(2024. 5. 22.)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8095(2024. 5. 24.)호]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센터”란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중부로 61에 둔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센터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센터의 공간적 부분, 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 등을 종합 판단하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다.

③ 센터의 입주자격은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영위하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료 등) ① 입주자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무상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간·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센터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승인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거나 유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입주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제8조(유지 및 보수)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생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생략>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② 영제13조제3항 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사용허가)하는 경우
2.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해당 민간·사회단체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연락처	(033) 330 - 2150